

제33회 양봉인의 날 행사 상품협찬 현황

- 대봉유리 : 꿀병 6,000개
- 일진에프앤피 : 약품(200만원 상당)
- 벌과 사람들 : 약품(200만원 상당)
- 조선밀봉원 : 벌통 5개, 급수기 200개, 꿀병 200개, 화분 채취기 120개, 프로폴리스 채취기 400개, 이동망 120개
- 설악양봉원 : 프로폴리스 제품 8세트 (100만원 상당)
- 야생양봉원 : 벌통 10개, 기화기 200개
- 다목 장수말벌 연구소 : 말벌 포획기 10세트
- (주)꽃샘종합식품 : 꿀차 20세트
- 현대양봉산업 : 50만원
- 경남인쇄사 : 30만원
- 건설화공약품양행 : 30만원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안내

2005년도부터 건강기능식품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만이 양봉산물 판매에 어려움 없다.

이에 따라 양봉농가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식품협회, 보건복지부, 식약청과의 협의하여 각 지역별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타진하였으나 양봉농가만 별도의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보 받은바 있다.

또한 전국 각 기관단체 및 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판매업을 할수 있는 관계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각 지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양봉농가는 아래 법정 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사전 교육을 신청하기 바란다.

*문의전화 : 02-3479-2100(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 홍보팀)

☆ 교육일정(판매업 교육)

일정	시간	장소
2005년 11월 24일	09:00~13:00	광주 상공회의소(호남권 지역)
2005년 11월 25일	09:00~13:00	대전 카톨릭 문화회관(충남권 지역)

*기타지역은 교육일정 확정되면 홍보 할 계획임.

협회보 발송 및 회비 납부 안내

본 협회에서 매달 발간하고 있는 양봉협회보 발송 대상자가 2003년도 2차 연석회의에서 최근 2년 회비 납부자로 변경되었음을 2003년도 5월 양봉협회보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에 따른 문의가 많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현재 양봉협회보가 발송되는 대상자는 2004년 또는 2005년 회비 납부자이며, 2006년도부터는 2005년 또는 2006년 회비 납부자에게 발송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회비를 회기년도 내에 납부하지 못하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조속히 회비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회보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협회로 전화주시면 주소 및 회비확인 후 즉시 재발송 해드리고 있사오니, 인근 양봉협회 회원께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비 미납회원이 5천명이 넘는 관계로 일일이 서신으로 회비 미납을 통보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협회보 발송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협회보 발송대상 (회비 납부년도)	2003 또는 2004	2004 또는 2005	2005 또는 2006

회비 수납 계좌번호 : 125-01-155940(농협, 한국양봉협회)

제주도양봉인 단합대회



지난 10.5일 제주도 양봉인가족 80여명이 참석하여 육놀이, 행운권추첨등 다양한 행사로 회원간의 화합의 장소를 마련했다.

2005년도 양봉교육 접수 안내

양봉농가를 위한 2005년도 양봉교육 개강 일자가 12월 일(요일)~일(요일)로 결정되어 1박2일 동안 개최된다.

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양봉농가는 11월20일까지 본 협사무국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는 교육장소 선정(숙박)에 어려움이 있어 100명만 입교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장소가 경기도 수원시 소재 농업연수원(농촌진흥청앞)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일자 : 2005년 12월 1일(목요일)~12월 2일(금요일) 1박 2일.
 - 등록 : 12월 1일 10:00~11:00(11:00~입교식) (선착순 100명)
 - 장소 : 농림부 농업연수원 (031-299-0058)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3-10)
 - 대상 : 양봉농가
 - 교육비 : 6만원(숙식포함)
 - 교육과목 : 12과목(야간 교육포함)
- ※ 자세한문의 : 031-291-6622 (협회 사무국)

2005년도 시,도 별 지회총회 개최

● 지회별 일정

지 회	날 째	지 회	날 째
인천광역시 지회	11월 17일(목)	울산광역시 지회	12월 8일(목)
강원도 지회	11월 18일(금)	대구광역시 지회	12월 9일(금)
전라북도 지회	11월 23일(수)	경상북도 지회	12월 13일(화)
전라남도 지회	11월 24일(목)	대전광역시 지회	12월 14일(수)
서울특별시 지회	11월 28일(월)	충청남도 지회	12월 15일(목)
경기도 지회	11월 29일(화)	충청북도 지회	12월 16일(금)
경상남도 지회	12월 6일(화)	제주도 지회	2006년 1월 3일(화)
부산광역시 지회	12월 7일(수)		

※ 상기 날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지회장께 문의 바라며,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양봉기자재 판매업자께서는 총회 진행 시간에는 가급적 판매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도 제4차 이사회 및 연석회의 개최

지난 10월 13일과 14일, 이를 동안 2005년도 제4차 임원 및 지회장 이사회 및 연석회의가 대전시 유성구 대온장에서 개최되었다.

13일 임원회의의 주요 쟁점은 지회총회 및 협회총회 개최일정과, 분회장, 지회장, 협회장의 임기가 마감되는 관계로 선거에 관련된 논의가 중점 논의되었다.

또한 지회장선출에 따른 투표권 및 선거인명부 작성대상자 및 작성기준 일자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 한 총회 및 선거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임원회의에서 조치되었다.

이어서 정부사업추진 전반(밀원식물, 밀원수묘목 보급, 우수 여왕벌보급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14일 시?도지회장 연석회의에서는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각종사업의 기본 방침을 전달하고 농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밖에 밀원식물 책자 배부 기준일자와 양봉사조금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의되었고, 특히 본 협회에는 2006년도부터 자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해로 정하고 자조금 거출방법(군당 가격책정, 꿀병 가격책정, 생산량) 및 기준 금액 등을 농가들의 의견모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조금사업은 모금 금액 중 70~8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자조금 사용방법은 20%는 교육비, 나머지 80%는 양봉산물 홍보비(방송, 언론매체)로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임원 및 지회장, 분회장은 임기 3년동안 나 보다는 회원 농가들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양봉산업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펴주신데 대하여 회원여러분을 대신해서 큰 박수를 보낸다.

2005 생명농업 엑스포 개최 현장

지난 9월 27일 오후 aT센터에서 "2005 생명농업 엑스포"가 우리쌀의 우수성, 채소·과일 등 최고급 농산물 전시, 마음의 고향 사진전, 건강과 농촌생활, 아파트 실내정원 전시, 전통떡 시식, 분재 만들기, 곤충모형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개최되었다.

박홍수 장관은 이날 행사장에 참석하여 "이 행사는 주제와 같이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농촌은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의 휴식처이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곳"이라며 농업·농촌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정해운 본협회 회장이 aT센터 내 홍성군 양봉산물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임원(지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

2005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는 지회총회 개최를 앞두고, 지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금번 개정은 제3-2조 ③항과 ④항을 신설하여 지회장 경선이 개최될 경우, 투표권을 가진 회원의 회비 현황을 확정지었고, 선거인명부를 만들어 보다 체계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요 골자는 지회총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본 협회 중앙회로 납부된 회비만 인정하고, 당해 연도 신규가입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회비를 납부하실 회원들은 조속히 지회 및 본 협회로 회비를 납부하시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참신한 일꾼을 선출합시다.

제 1조 (적용범위) 본회의 임원선거에 관하여는 본회 정관 제14조부터 제18조에 의하여 규정된 것 이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조 (임원의 선거)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 하고 그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3조 (선출방법) ① 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후보자는 총회 15일 전에 다음 각호와 같이 의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마치고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후보별 추천조건/등록금 현황

임 원	후보별 추천조건	후보별 등록금 ('97. 1. 22 신설)
1. 회 장	대의원 20인 이상의 추천	일금 3,000,000원
2. 부회장	대의원 15인 이상의 추천	일금 1,000,000원
3. 이 사	대의원 10인 이상의 추천	일금 500,000원
4. 감 사	대의원 10인 이상의 추천	일금 500,000원

단, 후보등록금은 등록접수시에 완납되어야 하며, 선거결과 당락에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으며, 기금사용처는 본협회 '회관적립금' 계정에 귀속시킨다.

③ 임원선거의 투표에 참가하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령으로 기표한다.

1. 회 장 : 1표
2. 부회장 : 2표 이내
3. 이 사 : 5표 이내
4. 감 사 : 2표 이내

④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할 수 있다.

제3-2조 (시 · 도지회장 선출방법) ① 지회장 선출에 입후보할 후보자는 소속지회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등록신청서를 지회총회 5일 전까지 지회 운영위원회에 제출, 등록한 후 지회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단독 입후보일 경우 지회 총회 동의를 얻어 당선을 확정한다.

② 전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회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는 분회장회의 또는 지회운영위원회에 서 지회장후보 1인을 추천, 지회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할 수 있다.

③ 지회장 선출 투표권 자격은 연례회비가 기일 내에 납부된 자이며 회비 미납자(전년도 기준)는 지회총회 3일전을 기준(협회 중앙회 회비 납부 기준)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5년 10월 13일 신설)

④ 단, 당해연도 신규가입자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③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2005년 10월 13일 신설)

⑤ 기타 선거관리등 세부사항은 이 규정 및 사회법용규칙을 준용한다.

제 4조 (선거의 관리) ① 회장단 출마자는 대의원 중에서 선거 및 투개표 참관인 1인씩을 추천 등록하여야 한다. 단, 임원후보로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

② 선거 및 투개표 관리위원장과 관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임원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은 임원이나 대의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회장선거를 제외한 임원선거는 토론(소견발표) 없이 투표에 들어간다.

④ 투개표 관리위원은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수의 부합을 확인하고 유효 및 무효표 여부를 확인한 뒤 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선관위 구성은 총회 20일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임원 후보로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 (2004년 1월 30일 신설)

⑥ 선거공고는 총회 1개월전에 공고한다. (2004년 1월 30일 신설)

⑦ 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사전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할 수 있다. (2004년 1월 30일 신설)

제 5조 (당 선) 임원의 당선은 총투표지수中最고 득점자순으로 하고, 동일득점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6조 (당선의 선포) 당선이 확정되면 의장은 그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 7조 (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피선거인 성명 이외에 다른 것을 기재한 것
3.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피선거인수 이상을 기입한 것

제 8조 (취임승락) 당선된 임원은 선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취임승락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자, 또는 공민권이 박탈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정관 제5조의 특별회원
5. 관련 양봉단체의 임직원
6. 임원은 협회 가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2004년 1월 30일 신설)
7. 지회장은 협회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자. (2004년 1월 30일 신설)
8. 기타 법령으로 제한된 자

제10조 (회장 이,취임식) 신임 회장은 당선 선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이,취임식을 개최할 수 있다. (2004년 1월 30일 신설)

한국봉료보건연구회

2005년도 제22회 정기총회 및 제25회 봉료연수회 행사안내

제22회 총회 및 제25회 봉료연수회 제6기 봉료지도사 선발 자격시험 및 승급시험 제5기 초보자를 위한 봉료교육

봉산물의 효과적인 활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양봉농가의 수익증대는 물론 봉침과 봉독을 위시한 봉산물의 적절한 활용으로 인체의 건강향상과 꿀벌의 생봉독을 활용한 친환경 축산업의 미래를 위한 봉료연수회 행사를 금년도에는 당일 행사로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 및 관심 있는 양봉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합니다.

※ 봉료지도사 선발 자격시험은 국제 봉료학술연구회와 한국 봉료보건연구회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격시험입니다.

1. 총회 및 연수회 행사(봉료지도사 선발 자격시험 포함)

- 가. 일 시 : 2005년 11월 26일(토) 09:00 ~ 22:00
- 나. 장 소 : 대구 경북대학교 전자계산소 강당
- 다. 행사주최 : 한국봉료보건연구회
- 라. 행사주관 :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 연구소
- 마. 후 원 : (사)한국양봉협회

2. 초보자 교육

- 가. 일시 : 2005년 11월 21일 ~ 11월 25일(4박5일)
- 나. 장소 : 호텔에어포트(대구공항 내)
 - ※ 초보자 봉료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11월26일 실시하는 봉료지도사 선발 자격시험(2급)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다. 교육 참가비 : 250,000(4박5일간의 숙박비, 식대, 교제대가 포함된 실비 임)

3. 참가신청 및 문의

참가비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연구회 사무국(고려양봉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35-16 (고려양봉원 내)

전화 : (053)424-5040, 8252 011-9356-810 FAX : (053)424-9659

2006년도 양봉 정부지원 사업 착수

(밀원식물, 밀원수 묘목보급, 우수꿀벌 품종보급사업, 한국의 밀원수 책자 배부)

최 규 칠 사무총장

본 협회에서는 양봉관련 정부지원사업을 2006년도부터 착수하여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들은 양봉산업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전국 양봉농가들의 참여 의식과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미래 양봉산업육성에 총력을 기울이자.

■ 밀원식물사업

가. 지원조건

- 종자대 및 비료대 지원(지원단가 : 40만원/ha)
 - 기금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 식재 밀원식물의 ha당 실제 종자대 및 비료대가 4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실제 종자대 및 비료대를 적용, 1ha 당 단가를 산출하여 보조금을 지원
 - * 식재 밀원식물의 ha당 실제 종자대 및 비료대가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ha당 40만원까지 만 보조금을 산출하여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농가부담

나. 밀원식물 신청요령

- 밀원식물을 식재하고자 하는 양봉농가는(서식1)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밀원식물 식재장소의 지적도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 밀원수 묘목보급사업

가. 지원조건

- 묘목대금 지원(기금보조50%, 자부담 50%)
- 분양 묘목 종류 : 헛개나무, 음나무

나. 밀원수 묘목 신청요령

○ 밀원수 묘목을 식재하고자 하는 농가는 밀원수 종류 및 식재량 등을 시·군 분회장을 통해 시·도 지회장에게 신청하고 식재장소 및 지적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 묘목분양은 각 시·도지회의 사업 신청량을 종합한 후 2006년 2월부터 배분할 예정임.

■ 우수 꿀벌품종 보급사업

가. 지원조건(기금보도 100%)

나. 우수품종배분 : 본 협회

다. 우수 꿀벌 품종 보급은 양봉농가에게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양봉학회 및 양봉관련학계와 1년간 우수품종을 선별실험을 거쳐 2007년부터 보급할 계획임.

라. 특히 본 협회에서는 시·도 지회별 밀원수 묘목 식재량에 따라 2007년부터 우수품종을 차등 배분 할 계획임.

■ 한국의 밀원수 책자 배부(전면 칼라 400페이지)

가. 배부수량 : 4,000부

나. 배부시기 : 12월 중

나. 밀원수 책자 배부기준 : 협회비 완납자.

【별지 제1호 서식】

밀원식물 식재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사육군수 : 개량종 (군), 재래종 (군)

2. 사업신청내용

- 밀원식물명 :
- 사업면적(ha) : ha(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
- 사업대상지(지번) :

※ 별첨 : 사업대상지 지적도 사본 1부

위와 같이 2006년도 밀원식물 식재사업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06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 · 군수 귀하

밀원식물 식재를 위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참여하자

최 규칠 사무총장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란 ?

농림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농촌경관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소득손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우리 양봉농가들은 이를 이용하여 밀원식물을 식재하여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지원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제1항, 제39조제2호, 제6호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등에 준하여 지원된다.

대상지역은 전국 면 지역 중 마을의 농가비율이 50%이상이며 농촌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 지급기준은 경관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소득손실액을 지급한다.

특히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2005년도에는 강원도 평창군 메밀꽃 축제, 남원시, 군산시, 제주도 등 40여개 시·군과 80여 농가들이 유채꽃을 식재하여 관광 및 축제행사를 하기위해 지원받았다.

★주요내용

- 사업비 지원 : 국고70%, 지방비30%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시행기관 : 시·군 등

- 지급대상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경관작물 :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작물

(예 : 맥류, 메밀, 유채, 화훼류 등)

- 지급조건

- 마을별로 경관보전계획을 수립(시장·군수와 경관보전협약)

- 지급방식

- 시장·군수가 매년 해당농가의 의무이행 여부를 최종확인 후 지급.

- 협약농가의 의무

- 경관작물식재 : 경관작물재배는 경관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일정면적 규모이상을 연접하여 재배하여야 함.

- 성실한 재배관리 및 작물 수확 후 농지정비

- 마을 주변 경관개선활동

- 마을 주변 조경, 식재

- 담장정리

- 유휴지 관리

- 논두렁 보수

- 꽃밭, 꽃길조성

- 유휴지 관리

- 실개천, 수로 정비

- 주변 숲 정리(산책로, 가지치기 등)

- 기타 마을의 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활동